

◆ D-53 중 대재해 발생시 실무적처리절차

1. 산업안전법관련 점검사항

- ① 안전교육(법31조) : 채용시 8시간(건설업 1시간), 정기2시간, 작업내용 변경시 2시간(건설업은 1시간), 특별교육 16시간(건설업은 2시간)
(시행규칙 제33조 제 3항)
- ② 보호구지급(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)
- ③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부착여부 확인(법 제33조, 시행규칙 제46조)
- ④ 추락방지조치 확인(표준안전난간, 작업발판, 승강설비, 추락방지망, 안전대부착 설비, 방망, 이동식사다리, 개구부덮개등 :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439조~ 451조확인) -- 해당 작업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검토 --
- ⑤ 건강진단 실시(법 43조): 고협압 유소견자 고기압, 잠함업무 금지, 채용시 건강진단 및 매1년마다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. 1년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이하 벌금
- ⑥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여부(법 제15조) 상시 50인이상(건설업은 100억)은 1명, 상시 500인이상사업장(건설업은 800억)은 2명 선임.
- ⑦ 보건관리자 선임신고여부(법 제16조): 상시 50인이상 1명(건설업은 제외)
- ⑧ 안전보건관리책임자(법 제13조): 상시 100인이상 사업장. 선임후 14일이내신고
- ⑨ 안전보건총괄책임자(법 제18조): 1차금속산업, 선박건조.수리업, 건설업, 제조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 선임(제조업은 상시 50인이상, 건설업은 20억이상공사)
- ⑩ 안전담당자(법 제14조, 시행령 제11조 제1항): 고압실내작업, 밀폐된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의 전기용접작업, 프레스(5대이상)에 의한 작업, 목재가공용기계(5대이상)작업, 운반용하역기계(5대이상),저 장탱크 내부작업, 특정화학물질을 이용한 세척작업, 건설용 리프트, 곤라라이용작업, 정전 및 활선작업, 콘크리트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파작업, 지반굴착작업,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, 동바리설치·해체작업, 터널안에서 굴착작업, 거푸집지보공 및 비계의 조립·해체작업, 건축물의 골조, 교량의 상부구조의 조립·해체작업, 맨홀작업, 유기용제 및 화학물질제조 및 취급작업

2. 입증서류의 준비

- ① 사고보고서 작성: 사고현장사진, 사고상황도 작성, 재해발생경위, 재해내용 및 재해사고 원인분석.
- ② 근로계약관련서류 확인: 근로계약서, 출근부(출역일보), 작업일지, 업무계약 관련서류
- ③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서류 확인: 안전교육일지, 안전점검일지, 보호구지급대장, 건강진단관련서류, 표준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,
- ④ 보상관련서류: 임금대장 및 갑근세납세실적증명원(급여는 사고이전 4개월분, 상여는 사고이전 1년치). 일용근로자의 경우 노임대장,
- ⑤ 사고입증관련서류: 목격자진술서: 사고원인부터 발생경위등 중요사항 인지하게 됨, 사망재해의 경우 문답서로 자세히 작성
 - 재해자진술서, 작업을 직접관리·감독한 작업반장등의 진술서
 - 당일 작업을 지시한 상급자의 작업지시 내용 파악

3. 중대재해 업무처리 절차

① 병원후송

추락재해등 위급한 환자일 경우 상병정도 상태를 최초 정확히 판단하여 적합한 병원으로 긴급후송

② 보고체계

- ㉠ 본사보고: 사고발생즉시 현장담당 기사는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사고발생 원인등 제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고, 즉시 사고보고서를 작성 해당부서에 보고
- ㉡ 가족통보: 재해자가 중상일 경우 즉시 가족에게 통보
- ㉢ 대관보고: 사망시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고, 24시간이내에 관할노동부 산업안전과에 보고(부상재해의 경우 14일 이내에 요양신청을 하여야 함, 고의로 공상처리시에는 산안법 제 10조위반(1,000만원이하 벌금)으로 입건될 수 있음.

③ 보안유지

- ㉠ 지휘계통의 확인
- ㉡ 유언비어 유포금지(사고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환자가족 또는 유족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관리요청)

- ㉔ 현장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 및 근로자들의 동요예방과 교육철저
- ㉕ 경찰서 형사계, 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,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서의 사고원인등에 대한 진술이 일치되어야 함.

④ 거증자료의 수집 및 보존

- ㉔ 현장보존: 사망사고시에는 경찰서와 노동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
 - 사고발생시 조사자는 카메라, 줄자등을 준비하여 조사의 객관성 유지
- ㉕ 사고현장의 사진 및 약도
- ㉕ 피해자, 목격자,가해자 확보등 인적사항파악, 사고관련담당자 진술서징구
- ㉕ 하도급업체 및 제3자 가해여부 확인 조사
- ㉕ 채용관계서류 확인(안전일지, 근로계약서, 노무비지급명세서, 출역일보, 작업일보)
- ㉕ 사망의 경우 사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 5매이상 확보
- ㉕ 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(사망시)확보
- ㉕ 대관과의 유대(경찰서, 노동부산업안전과, 근로복지공단 보상부)
- ㉕ 사고처리에 대한 대응책마련 :실질적인 보상 및 합의추진

⑤ 환자관리

- ㉔ 적절한 요양기관에서 치료요양토록 조치(장기환자는 6인 병실사용)
- ㉕ 요양절차 및 산재보험급여 및 치료종결후의 근재보험수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촉구
- ㉕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위로할 것
- ㉕ 환자와의 유대강화 및 무관심한 인식 해소
- ㉕ 제 3자 개입 사전방지
- ㉕ 요양기록부 작성 관리: 장해가 남는 재해의 경우나 장기요양 재해자에 대하여는 재해관련서류를 3년이상 보관하여 민사소송 대비하여야 함.